

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, 이렇게 달라집니다



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

01

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!

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(자녀, 부모 등)은 ‘세대원’으로, 그 외는 ‘동거인’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.



기존 표기법			개선 표기법		
번호	세대주와의 관계	성명(한자)	번호	세대주와의 관계	성명(한자)
1	본인	김훈민	1	본인	김훈민
2	배우자	최정음	2	배우자	최정음
3	자녀	김세종	3	세대원	김세종
4	배우자의 자녀	이대왕	4	세대원	이대왕
5	삼촌	김한글	5	동거인	김한글

02

등·초본 발급 시 ‘일반·상세’ 선택 가능!

“일반”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,
“상세”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됩니다.



번호	세대주와의 관계	세대주와의 관계	성명(한자)	...
1	일반(개선)	상세(기존)	김훈민	
2			최정음	
3	세대원	자녀	김세종	
4	세대원	배우자의 자녀	이대왕	
5	동거인	삼촌	김한글	

03

발급 전,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!

-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‘일반’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!
-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“상세”를 선택하셨을 경우 ‘용도 및 목적’ 작성이 필수입니다.

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전
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 형태를
꼭 확인하세요!

